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판 결

사 건 2022가단125049 기술료 청구  
원 고 A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빈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2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각 2022.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부터 2018. 12. 26.까지 'C'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피고를 비롯한 12개의 기업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D'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17. 12. 8. 피고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실시 계약명: D

-착수기술료: 100,000,000원(부가세 별도)

-경상기술료: 총 매출액의 2%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8년

○ 계약당사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원고

실시기업: 피고

제1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시"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 및 권리를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기업"이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한다.



(생략)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의 권리를 말한다.

제5조(기술료 납부)

① "실시기업"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로 착수기술료 금 일억원(₩100,000,000)(VAT 별도)을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경상기술료로 계약기간 동안 매년 총매출액의 2%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차: 계약일로부터 10일까지 일금 일천만원 정 (₩) 10,000,000원(부가세 별도)

2차: 2018년 4월 30일까지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부가세 별도)

3차: 2018년 8월 30일까지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부가세 별도)

4차: 2018년 11월 30일까지 일금 일천만원 정(₩) 10,000,000원(부가세 별도)

5차: 2019년 1월 30일까지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원(부가세 별도)

6차: 2019년 4월 30일까지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원(부가세 별도)

7차: 2019년 9월 30일까지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 (₩) 15,000,000원(부가세 별도)

8차: 2019년 12월 30일까지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원(부가세 별도)

제7조(기술이전의 완료)

① "실시기업"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첨부 1의 양식에 따른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술이전의 완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제6조에 따른 기술자료를 "실시기업"에게 모두 제공하여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상호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기술료로 2019. 7. 31. 1,000만 원, 2021. 7. 13. 1,000만 원, 2021. 12. 31. 5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착수기술료 89,500,000원(= 110,000,000원 - 20,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3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다. 개발완료 이후인 2019. 3.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 관련 국내 법이 전면 개정되어 원고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당초 개발된 제품도 상용화가 불가능하므로 기술사용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 2)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중 이 부분 쟁점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이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하여 설정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은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제4조(실시권의 포기)

"실시기업"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기간 이내에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실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6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시기업"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실시기업"이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 이내에 "기술"의 사용 및 활용(연구개발,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은 제5조 제1항의 착수기술료 금 일억원과 계약해지일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실시', '기술료'의 정의, 착수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착수기술료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의한 기술(에스컬레이터의 장애인 탑승모드 전환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휠체어 스톱퍼 장치 등)을 사용, 생산 또는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 대가이고, 경상기술료는 실제 판매에 따른 이익 중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해석된다. 즉, 착수기술료는 기술 사용 결과에 관계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에 대한 대가이다. 실제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며 특히



제9조의 취지에 따르면 기술의 실용화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6조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사용을 포기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착수기술료 지급의무는 남아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기술 사용을 포기한다고 하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 사용을 포기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착수기술료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3)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가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먼저 이 사건 계약 후 법령 개정으로 피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보건대, 2018. 3. 27.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도 2019. 4. 4. 전부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는 교통약자용 에스컬레이터를 개정 승강기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갖고 있



는 기술이 위 고시의 어떤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다.

피고는 향후 시행되는 안전기준, 검사기준, 설치기준, 인증기준에 따라 JIS 기반 제품을 EN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엘레베이터로 기능 대체, 개발비용 대비 제품의 신뢰도 저하, 관리비용 과다, 장애인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 거부)로 시장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시장성이 있는지 여부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시장성 변동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피고는 현재 교통약자 에스컬레이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인증기준, 설치검사기준이 없는 상태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계약 당시에 존재하던 사정으로서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그의 일방적 의사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제16조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인 원고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달리 해지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